

○委員長 朴泰源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  
都市計劃局所管都市計劃決定案에對한議會意見聽取  
의件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오늘 審査하게 될 都市計劃局所管 議會意見  
聽取의 件은 今 會期 第1次 會議에서 保留  
된 二件입니다.

第1次 會議時 保留 件에 대하여 專門委員  
의 檢討報告 및 執行部의 提案說明을 들은  
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案件審査하도  
록 하겠습니다.

議案番號 1224番, 江東區 明逸洞 306의 9  
都市計劃施設 公園決定에 對해 意見이 있으  
면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「意見 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異議 없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지금까지 審査한 바를 市長이 提出한 原案  
대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  
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3. 주요요지

○입안내용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 고
신 설	공 원	강동구 명일동 306-9	661	형질변경 허가조건상의 공 공용지를 공원으로 결정

4. 참고사항

○토지구(조동수) 이의신청 접수: 사유재산권  
을 침해하  
는 공원결  
정 반대

-현 토지구 조동수는 '89.10.16 강동구청  
장으로부터 “기부채납 대상토지(공공용  
지)”라고 명시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 
받고도 '89.10.16 성업공사에서 시행한  
경매에 참가하여 대상토지를 취득하였  
고,

-강동구청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  
송제기하여 수허가자 총산개발대표 김상

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 
제출년월일: '95. 1. 28  
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2. 제안이유

○공원결정 입안지인 강동구 명일동 306-9  
대지 661m<sup>2</sup>는

- '83.8.2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시 공공용  
지로 기부채납토록 조건부여된 토지이  
나,

- '84.7.14 형질변경된 대지 2,319m<sup>2</sup> 지상  
에는 지하 2층, 지상 5층, 연면적 8,  
304m<sup>2</sup> 시장용도 등의 건축물만 준공되  
고,

- 공공용지는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이행되  
지 않아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하여  
관리코자 함.

육에게 손해배상청구중임.

※경매낙찰가: 140,600천원(현감정가 800,000  
천원)

○委員長 朴泰源 議案番號 1296番, 瑞草區  
瑞草洞 1446의 1 一帶 都市計劃 用途地域  
施設 變更決定에 對해 意見이 있으시면 發言  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李載鎬委員, 말씀하십시오.

○李載鎬委員 李載鎬委員입니다.

이 地域은 供覽公告時 住民의 意見도 없고,  
이 地域의 綜合開發計劃으로 보아 市의 原案  
대로 同意할 것을 원합니다.